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96. 3. 30.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2.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6.2.6.
- 다. 상정일자 : 제36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96.2.8.) 상정, 심사, 보류
제3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96.3.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연호 보건
지도과장)

가. 제안이유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 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구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금지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함(안 제2조)

○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들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안 제3조)

○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유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1995.1.5. 법률 제4914호) 제10조에 근거한 제정안임.

○ 동 조례안은 제2조에서 제3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동 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에서 안 제2조제3호의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김연호 보건지도과장) : 안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은 불법광고를 하는 업소가 있으면 마포구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요청 공문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봄.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3.30. 한대운 위원회 1인

나. 수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이 있기 때문임.

다. 수정 주요 골자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2조제3호)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 3. 30.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회

1. 수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이 있기 때문임.

2. 수정주요골자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를 “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원안·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생략”	제2조(기능) “원안과 같음”
1.~2. “생략”	1.~2. “원안과 같음”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생략”	4.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 3. 30.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7회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96.3.30.) 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가. 제출이유

차량의 폭증과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함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간사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함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5.3.14. 조례 제28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구성과 사무직원을 현 행정기구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효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일자 : 1996. 3. 20.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차량의 폭증과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